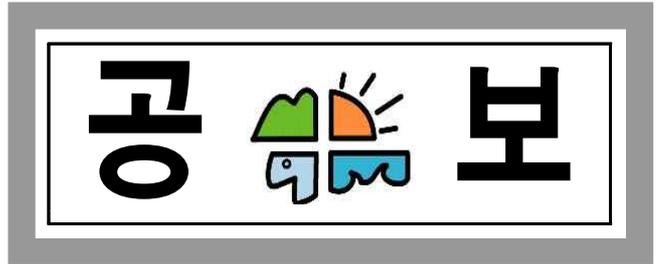


#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353호 2021년 10월 22일(금)

## 고 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 2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원 12: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1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13
- 동명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 17

## 공 고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18

## 입법예고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0

**속초시고시 제2021-126호**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청초호유원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

1. 공간시설(유원지)

가.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m <sup>2</sup>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청초호유원지	강원도 속초시 교동, 조양동	339,780	-	339,780	1993. 8. 17 (강고 제93-94호)	

나. 유원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	청초호 유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치 : 조양동 1545-1</li> <li>• 면적 : 15,887m<sup>2</sup></li> <li>• 세부시설 용도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정 : 특수시설(5-1번 / 감 15,887m<sup>2</sup>)</li> <li>- 변경 : 특수 및 편익시설(6-3번 / 증 15,887m<sup>2</sup>)</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의 랜드마크화를 통한 시민들의 문화·생활 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li> <li>• 문화시설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시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세부시설 용도변경</li> </ul>

다. 청초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조서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339,780.0	339,780.0	-	67,820	67,820	-	393,863	393,863	-		건폐율:19.96% 용적률:115.92%
소계	휴양 및 편익시설지		10,308.9	10,308.9	-	1,960	1,960	-	9,800	9,800	-		
1	휴양 및 편익시설	1544-4	10,308.9	10,308.9	-	1,960	1,960	-	9,800	9,800	-	5층	
소계	운동시설지		2,619.9	2,619.9	-	520	520	-	2,600	2,600	-		
2	운동시설	1555-2	2,619.9	2,619.9	-	520	520	-	2,600	2,600	-	5층	
소계	유희 및 편익시설지		3,298.8	3,298.8	-	650	650	-	3,250	3,250	-		
3	유희 및 편익시설	1555-1	3,298.8	3,298.8	-	650	650	-	3,250	3,250	-	5층	
소계	휴양시설지		49,392.8	49,392.8	-	20,127	20,127	-	170,339	170,339	-		
4-1	휴양시설	1024-1	17,108.6	17,108.6	-	5,890	5,890	-	70,680	70,680	-	12층	
4-2	휴양시설	1557-1	11,433.3	11,433.3	-	5,700	5,700	-	39,900	39,900	-	7층	
4-3	휴양시설	1020-4	658.3	658.3	-	296	296	-	2,072	2,072	-	7층	
4-4	휴양시설	1020-5	639.0	639.0	-	287	287	-	2,009	2,009	-	7층	
4-5	휴양시설	1019-6	594.3	594.3	-	267	267	-	1,869	1,869	-	7층	
4-6	휴양시설	1019-7	594.6	594.6	-	267	267	-	1,869	1,869	-	7층	
4-7	휴양시설	1019-8	594.6	594.6	-	267	267	-	1,869	1,869	-	7층	
4-8	휴양시설	1019-15	594.1	594.1	-	267	267	-	1,869	1,869	-	7층	
4-9	휴양시설	1019-16	594.1	594.1	-	267	267	-	1,869	1,869	-	7층	
4-10	휴양시설	1019-17	594.2	594.2	-	267	267	-	1,869	1,869	-	7층	
4-11	휴양시설	1554-1	735.1	735.1	-	330	330	-	2,310	2,310	-	7층	
4-12	휴양시설	1554-4	737.6	737.6	-	331	331	-	2,317	2,317	-	7층	
4-13	휴양시설	1554-2	734.4	734.4	-	330	330	-	2,310	2,310	-	7층	
4-14	휴양시설	1554-3	737.8	737.8	-	332	332	-	2,324	2,324	-	7층	
4-15	휴양시설	1554-5	841.7	841.7	-	378	378	-	2,646	2,646	-	7층	
4-16	휴양시설	1553-1	727.8	727.8	-	327	327	-	2,289	2,289	-	7층	
4-17	휴양시설	1553-4	742.2	742.2	-	333	333	-	2,331	2,331	-	7층	
4-18	휴양시설	1553-2	748.0	748.0	-	336	336	-	2,352	2,352	-	7층	
4-19	휴양시설	1553-3	1,626.8	1,626.8	-	731	731	-	5,117	5,117	-	7층	미르
4-20	휴양시설	1553-5											
4-21	휴양시설	1558-2	4,928.0	4,928.0	-	1,724	1,724	-	12,068	12,068	-	7층	
4-22	휴양시설	1558-3	3,428.3	3,428.3	-	1,200	1,200	-	8,400	8,400	-	7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소 계	특수시설지		18,547.0	2,660	감)15,887	5,272	502	감)4,770	24,352	502	감)23,850		
5-1	특수시설	1545-1	15,887.0	-	감)15,887	4,770	-	감)4,770	23,850	-	감)23,850	5층	
5-2 (→ 5-1)	특수시설	1544-2	300.0	300.0	-	-	-	-	-	-	-		조각 시설
5-3 (→ 5-2)	특수시설	1544-2	1,110.0	1,110.0	-	160	160	-	160	160	-	1층	야외 음악당
5-4 (→ 5-3)	특수시설	1025-1	1,250.0	1,250.0	-	342	342	-	342	342	-	1층	어린이교 통안전체 협교육장
소 계	특수 및 편익시설지		19,455	35,342	증)15,887	3,480	8,250	증)4,770	17,400	41,250	증)23,850		
6-1	특수 및 편익시설	1546-1	14,325.4	14,325.4	-	2,480	2,480	-	12,400	12,400	-	5층	
6-2	특수 및 편익시설	1544-5	5,129.6	5,129.6	-	1,000	1,000	-	5,000	5,000	-	5층	마리나 활성화 관련시설
6-3	특수 및 편익시설	1545-1	-	15,887.0	증)15,887	-	4,770	증)4,770	-	23,850	증)23,850	5층	
소 계	편익시설지		84,132.8	84,132.8	-	35,883	35,883	-	166,194	166,194	-		
7-1	편익시설	1019-1	446.0	446.0	-	223	223	-	1,115	1,115	-	5층	
7-2	편익시설	1019-2	435.8	435.8	-	218	218	-	1,090	1,090	-	5층	
7-3	편익시설	1019-3	436.1	436.1	-	218	218	-	1,090	1,090	-	5층	
7-4	편익시설	1019-4	435.8	435.8	-	218	218	-	1,090	1,090	-	5층	
7-5	편익시설	1019-5	435.9	435.9	-	218	218	-	1,090	1,090	-	5층	
7-6	편익시설	1019-10	406.5	406.5	-	203	203	-	1,015	1,015	-	5층	
7-7	편익시설	1019-11	434.8	434.8	-	217	217	-	1,085	1,085	-	5층	
7-8	편익시설	1019-12	435.5	435.5	-	218	218	-	1,090	1,090	-	5층	
7-9	편익시설	1019-13	435.5	435.5	-	218	218	-	1,090	1,090	-	5층	
7-10	편익시설	1019-14	435.6	435.6	-	218	218	-	1,090	1,090	-	5층	
7-11	편익시설	1019-9	487.9	487.9	-	244	244	-	1,220	1,220	-	5층	
7-12	편익시설	1019-18	336.6	336.6	-	168	168	-	840	840	-	5층	
7-13	편익시설	1021-1	320.7	320.7	-	160	160	-	800	800	-	5층	
7-14	편익시설	1021-2	337.5	337.5	-	169	169	-	845	845	-	5층	
7-15	편익시설	1021-3	337.9	337.9	-	169	169	-	845	845	-	5층	
7-16	편익시설	1021-4	338.0	338.0	-	169	169	-	845	845	-	5층	
7-17	편익시설	1021-5	338.9	338.9	-	169	169	-	845	845	-	5층	
7-18	편익시설	1021-6	339.4	339.4	-	170	170	-	850	850	-	5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19	편익시설	1021-7	339.6	339.6	-	170	170	-	850	850	-	5층	
7-20	편익시설	1021-8	340.1	340.1	-	170	170	-	850	850	-	5층	
7-21	편익시설	1021-9	340.7	340.7	-	170	170	-	850	850	-	5층	
7-22	편익시설	1021-10	324.6	324.6	-	162	162	-	810	810	-	5층	
7-23	편익시설	1021-11	288.7	288.7	-	144	144	-	720	720	-	5층	
7-24	편익시설	1021-12	337.5	337.5	-	169	169	-	845	845	-	5층	
7-25	편익시설	1021-13	338.1	338.1	-	169	169	-	845	845	-	5층	
7-26	편익시설	1021-14	338.2	338.2	-	169	169	-	845	845	-	5층	
7-27	편익시설	1021-15	339.1	339.1	-	170	170	-	850	850	-	5층	
7-28	편익시설	1021-16	339.8	339.8	-	170	170	-	850	850	-	5층	
7-29	편익시설	1021-17	339.9	339.9	-	170	170	-	850	850	-	5층	
7-30	편익시설	1021-18	340.4	340.4	-	170	170	-	850	850	-	5층	
7-31	편익시설	1021-19	341.0	341.0	-	171	171	-	855	855	-	5층	
7-32	편익시설	1021-20	336.9	336.9	-	168	168	-	840	840	-	5층	
7-33	편익시설	1023-1	326.0	326.0	-	163	163	-	815	815	-	5층	
7-34	편익시설	1023-2	336.3	336.3	-	168	168	-	840	840	-	5층	
7-35	편익시설	1023-3	673.2	673.2	-	336	336	-	1,680	1,680	-	5층	
7-36	편익시설	1023-8											
7-37	편익시설	1023-4	336.4	336.4	-	168	168	-	840	840	-	5층	
7-38	편익시설	1023-5	330.8	330.8	-	165	165	-	825	825	-	5층	
7-39	편익시설	1023-6	327.6	327.6	-	164	164	-	820	820	-	5층	
7-40	편익시설	1023-7	336.5	336.5	-	168	168	-	840	840	-	5층	
7-41	편익시설	1023-9	336.3	336.3	-	168	168	-	840	840	-	5층	
7-42	편익시설	1023-10	331.3	331.3	-	166	166	-	830	830	-	5층	
7-43	편익시설	1541-1	12,310.5	12,310.5	-	4,300	4,300	-	21,500	21,500	-	5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44	편익시설	1542-1	361.0	361.0	-	181	181	-	543	543	-	3층	
7-45	편익시설	1542-4	357.0	357.0	-	179	179	-	537	537	-	3층	
7-46	편익시설	1542-5	399.2	399.2	-	200	200	-	600	600	-	3층	
7-47	편익시설	1542-8	366.9	366.9	-	183	183	-	549	549	-	3층	
7-48	편익시설	1542-9	367.1	367.1	-	184	184	-	552	552	-	3층	
7-49	편익시설	1542-12	472.1	472.1	-	236	236	-	708	708	-	3층	
7-50	편익시설	1542-2	280.5	280.5	-	140	140	-	420	420	-	3층	
7-51	편익시설	1542-3	267.1	267.1	-	134	134	-	402	402	-	3층	
7-52	편익시설	1542-6	377.3	377.3	-	189	189	-	567	567	-	3층	
7-53	편익시설	1542-7	367.2	367.2	-	184	184	-	552	552	-	3층	
7-54	편익시설	1542-10	367.6	367.6	-	184	184	-	552	552	-	3층	
7-55	편익시설	1542-11	501.2	501.2	-	251	251	-	753	753	-	3층	
7-56	편익시설	1543-1	1,683.5	1,683.5	-	842	842	-	3,368	3,368	-	4층	
7-57	편익시설	1543-2	466.6	466.6	-	233	233	-	932	932	-	4층	
7-58	편익시설	1543-3	387.6	387.6	-	194	194	-	776	776	-	4층	
7-59	편익시설	1543-4	496.2	496.2	-	248	248	-	992	992	-	4층	
7-60	편익시설	1547-1	442.4	442.4	-	221	221	-	884	884	-	4층	
7-61	편익시설	1547-4	459.8	459.8	-	230	230	-	920	920	-	4층	
7-62	편익시설	1547-5	459.3	459.3	-	230	230	-	919	919	-	4층	
7-63	편익시설	1547-8	458.9	458.9	-	229	229	-	916	916	-	4층	
7-64	편익시설	1547-9	453.4	453.4	-	227	227	-	908	908	-	4층	
7-65	편익시설	1550-1	403.0	403.0	-	202	202	-	808	808	-	4층	
7-66	편익시설	1550-4	776.3	776.3	-	388	388	-	1,552	1,552	-	4층	
7-67	편익시설	1550-5											
7-68	편익시설	1550-8	387.5	387.5	-	194	194	-	776	776	-	4층	
7-69	편익시설	1550-9	392.3	392.3	-	196	196	-	784	784	-	4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70	편익시설	1551-1	414.2	414.2	-	207	207	-	828	828	-	4층	
7-71	편익시설	1551-4	419.5	419.5	-	210	210	-	840	840	-	4층	
7-72	편익시설	1551-5	419.1	419.1	-	210	210	-	840	840	-	4층	
7-73	편익시설	1551-8	418.7	418.7	-	209	209	-	836	836	-	4층	
7-74	편익시설	1551-9	411.8	411.8	-	206	206	-	824	824	-	4층	
7-75	편익시설	1547-2	443.4	443.4	-	222	222	-	1,110	1,110	-	5층	
7-76	편익시설	1547-3	460.0	460.0	-	230	230	-	1,150	1,150	-	5층	
7-77	편익시설	1547-6	459.5	459.5	-	230	230	-	1,150	1,150	-	5층	
7-78	편익시설	1547-7	459.1	459.1	-	230	230	-	1,150	1,150	-	5층	
7-79	편익시설	1547-10	441.8	441.8	-	221	221	-	1,105	1,105	-	5층	
7-80	편익시설	1550-2	394.7	394.7	-	197	197	-	985	985	-	5층	
7-81	편익시설	1550-3	388.4	388.4	-	194	194	-	970	970	-	5층	
7-82	편익시설	1550-6	387.8	387.8	-	194	194	-	970	970	-	5층	
7-83	편익시설	1550-7	387.3	387.3	-	194	194	-	970	970	-	5층	
7-84	편익시설	1550-10	382.0	382.0	-	191	191	-	955	955	-	5층	
7-85	편익시설	1551-2	411.7	411.7	-	206	206	-	1,030	1,030	-	5층	
7-86	편익시설	1551-3	419.5	419.5	-	210	210	-	1,050	1,050	-	5층	
7-87	편익시설	1551-6	838.1	838.1	-	419	419	-	2,095	2,095	-	5층	(주) 청초수
7-88	편익시설	1551-7											
7-89	편익시설	1551-10	400.9	400.9	-	200	200	-	1,000	1,000	-	5층	
7-90	편익시설	1548-1	433.4	433.4	-	217	217	-	1,085	1,085	-	5층	
7-91	편익시설	1548-4	452.2	452.2	-	226	226	-	1,130	1,130	-	5층	
7-92	편익시설	1548-5	452.3	452.3	-	226	226	-	1,130	1,130	-	5층	
7-93	편익시설	1548-8	452.3	452.3	-	226	226	-	1,130	1,130	-	5층	
7-94	편익시설	1548-9	437.9	437.9	-	219	219	-	1,095	1,095	-	5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95	편익시설	1549-1	380.0	380.0	-	190	190	-	950	950	-	5층	
7-96	편익시설	1549-4	392.3	392.3	-	196	196	-	980	980	-	5층	
7-97	편익시설	1549-5	392.4	392.4	-	196	196	-	980	980	-	5층	
7-98	편익시설	1549-8	392.5	392.5	-	196	196	-	980	980	-	5층	
7-99	편익시설	1549-9	375.5	375.5	-	188	188	-	940	940	-	5층	
7-100	편익시설	1552-1	406.1	406.1	-	203	203	-	1,015	1,015	-	5층	
7-101	편익시설	1552-4	414.3	414.3	-	207	207	-	1,035	1,035	-	5층	
7-102	편익시설	1552-5	414.3	414.3	-	207	207	-	1,035	1,035	-	5층	
7-103	편익시설	1552-8	414.2	414.2	-	207	207	-	1,035	1,035	-	5층	
7-104	편익시설	1552-9	421.9	421.9	-	211	211	-	1,055	1,055	-	5층	
7-105	편익시설	1548-2	415.5	415.5	-	208	208	-	832	832	-	4층	
7-106	편익시설	1548-3	452.3	452.3	-	226	226	-	904	904	-	4층	
7-107	편익시설	1548-6	452.5	452.5	-	226	226	-	904	904	-	4층	
7-108	편익시설	1548-7	897.8	897.8	-	449	449	-	1,796	1,796	-	4층	
7-109	편익시설	1548-10											
7-110	편익시설	1549-2	390.7	390.7	-	195	195	-	780	780	-	4층	
7-111	편익시설	1549-3	392.1	392.1	-	196	196	-	784	784	-	4층	
7-112	편익시설	1549-6	392.1	392.1	-	196	196	-	784	784	-	4층	
7-113	편익시설	1549-7	392.1	392.1	-	196	196	-	784	784	-	4층	
7-114	편익시설	1549-10	383.4	383.4	-	192	192	-	768	768	-	4층	
7-115	편익시설	1552-2	836.8	836.8	-	418	418	-	1,672	1,672	-	4층	
7-116	편익시설	1552-11											
7-117	편익시설	1552-6	828.2	828.2	-	414	414	-	1,656	1,656	-	4층	
7-118	편익시설	1552-7											
7-119	편익시설	1552-10	423.2	423.2	-	212	212	-	848	848	-	4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120	편익시설	1556-1	436.1	436.1	-	87	87	-	261	261	-	3층	
7-121	편익시설	1556-2	434.9	434.9	-	87	87	-	261	261	-	3층	
7-122	편익시설	1556-3	434.0	434.0	-	87	87	-	261	261	-	3층	
7-123	편익시설	1556-4	506.3	506.3	-	101	101	-	303	303	-	3층	
7-124	편익시설	1556-5	506.3	506.3	-	101	101	-	303	303	-	3층	
7-125	편익시설	1544-1	7,579.5	7,579.5	-	800	800	-	4,000	4,000	-	15층	상정탑 H=72m
7-126	편익시설	1020-2	606.0	606.0	-	303	303	-	1,515	1,515	-	5층	
7-127	편익시설	1020-3	633.5	633.5	-	317	317	-	1,585	1,585	-	5층	
7-128	편익시설	1022-1	594.4	594.4	-	267	267	-	1,335	1,335	-	5층	
7-129	편익시설	1022-2	497.6	497.6	-	224	224	-	1,120	1,120	-	5층	
7-130	편익시설	1022-3	430.8	430.8	-	194	194	-	970	970	-	5층	
7-131	편익시설	1022-4	437.5	437.5	-	197	197	-	985	985	-	5층	
7-132	편익시설	1022-5	417.5	417.5	-	188	188	-	940	940	-	5층	
7-133	편익시설	1022-6	480.5	480.5	-	216	216	-	1,080	1,080	-	5층	
7-134	편익시설	1022-7	450.0	450.0	-	202	202	-	1,010	1,010	-	5층	
7-135	편익시설	1022-8	451.4	451.4	-	203	203	-	1,015	1,015	-	5층	
7-136	편익시설	1022-9	462.3	462.3	-	208	208	-	1,040	1,040	-	5층	
7-137	편익시설	1022-10	444.7	444.7	-	200	200	-	1,000	1,000	-	5층	
7-138	편익시설	1022-11	411.8	411.8	-	185	185	-	925	925	-	5층	
7-139	편익시설	1022-12	410.2	410.2	-	185	185	-	925	925	-	5층	
7-140	편익시설	1022-13	410.6	410.6	-	185	185	-	925	925	-	5층	
7-141	편익시설	1022-14	410.5	410.5	-	185	185	-	925	925	-	5층	
7-142	편익시설	1022-15	415.3	415.3	-	187	187	-	935	935	-	5층	
7-143	편익시설	1022-16	415.4	415.4	-	187	187	-	935	935	-	5층	
7-144	편익시설	1022-17	410.3	410.3	-	185	185	-	925	925	-	5층	
7-145	편익시설	1022-18	410.4	410.4	-	185	185	-	925	925	-	5층	
7-146	편익시설	1022-19	410.0	410.0	-	185	185	-	925	925	-	5층	
7-147	편익시설	1022-20	411.8	411.8	-	185	185	-	925	925	-	5층	

시설 번호	시설명	지번	부지면적(m <sup>2</sup> )			시설규모(m <sup>2</sup> )						층수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건축연면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7-148	편익시설	1022-21	412.0	412.0	-	185	185	-	925	925	-	5층	
7-149	편익시설	1022-22	410.7	410.7	-	185	185	-	925	925	-	5층	
7-150	편익시설	1022-23	411.2	411.2	-	185	185	-	925	925	-	5층	
7-151	편익시설	1022-24	411.7	411.7	-	185	185	-	925	925	-	5층	
7-152	편익시설	1022-25	416.9	416.9	-	188	188	-	940	940	-	5층	
7-153	편익시설	1022-26	404.5	404.5	-	182	182	-	910	910	-	5층	
7-154	편익시설	1022-27	411.8	411.8	-	185	185	-	925	925	-	5층	
7-155	편익시설	1022-28	411.0	411.0	-	185	185	-	925	925	-	5층	
7-156	편익시설	1022-29	410.8	410.8	-	185	185	-	925	925	-	5층	
7-157	편익시설	1022-30	411.9	411.9	-	185	185	-	925	925	-	5층	
소 계	관리시설지		74,928.3	74,928.3	-	-	-	-	-	-	-		
8-1	관리시설	1020-1	7,087.3	7,087.3	-	-	-	-	-	-	-		주차장
8-2	관리시설	1544-3	6,352.3	6,352.3	-	-	-	-	-	-	-		주차장
8-3	관리시설	1556-6	4,106.7	4,106.7	-	-	-	-	-	-	-		주차장
8-4	관리시설	1026-1 외	57,382.0	57,382.0	-	-	-	-	-	-	-		도로
소 계	기타시설지		77,096.5	77,096.5	-	270	270	-	270	270	-		
9-1	기타시설	1025-1	34,789.5	34,789.5	-	90	90	-	90	90	-	1층	화장실1개소 파고라9개소 매점1개소
9-2	기타시설	1543-5	4,963.0	4,963.0	-	-	-	-	-	-	-		파고라7개소
9-3	기타시설	1544-2	31,261.4	31,261.4	-	180	180	-	180	180	-	1층	화장실2개소 파고라1개소 매점2개소
9-4	기타시설	1556-7	1,238.0	1,238.0	-	-	-	-	-	-	-		완충녹지
9-5	기타시설	1558-1	1,505.3	1,505.3	-	-	-	-	-	-	-		완충녹지
9-6	기타시설	1559-3	3,339.3	3,339.3	-	-	-	-	-	-	-		호안

라. 기타사항

- 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상 건축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면적으로 한다.
- 토지이용계획이 동일한 연접 2필지에 대하여 단일 개발을 허용하되, 각 부지 시설규모(건축면적, 건축연면적)의 합과 층수를 초과할 수 없음
- 마리나활성화 관련시설은 관계부서(관광과) 협의 필요

**속초시고시 제2021-12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공원 12: 문화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시설:공원) 및 공원조성계획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관광과 및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15일

**속 초 시 장**

-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가. 공간 시설

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치	면적(㎡)			최 초 결 정 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㉔	공원	문화공원	설악동 246-91번지 일원	1,631	-	1,631	강원도고시 제2014-163호 (2014.05.02.)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나.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조서

1)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조서

신설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비고
				동수 (동)	바닥 면적	연면적	
총 계		1,631	100.00	1.0	12.0	12.0	
시설소계		939.0	57.6	-	-	-	
기반시설	도로, 광장	215.0	13.2	-	-	-	
조경시설	잔디마당	78.0	4.8	-	-	-	
휴양시설	휴게광장1,2, 휴게테크	623.0	38.2	-	-	-	
편익시설	화장실	23.0	1.4	1.0	12.0	12.0	
녹지 및 기타		692	42.4	-	-	-	

2) 세부공원시설 결정(변경) 조서

□ 신설

구분	시설명	부호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건축물(㎡)		공작물 (기)	비고
					바닥면적	연면적		
계			1,631.0	939.0	12.0	12.0	22	
기반 시설	소 계		215.0	215.0	-	-	-	
	진입광장	가	145.0	145.0	-	-	-	
	도로		70.0	70.0	-	-	-	
조경 시설	소 계		78.0	78.0	-	-	-	
	잔디마당-1	나-1	50.0	50.0	-	-	-	
	잔디마당-2	나-2	28.0	28.0	-	-	-	
휴양 시설	소 계		623.0	623.0	-	-	16	
	휴게광장-1	다-1	389.0	389.0	-	-	-	
	휴게광장-2	다-2	211.0	211.0	-	-	-	
	휴게데크	다-3	23.0	23.0	-	-	-	
	파고라 A	①	-	-	-	-	1	
	파고라 B	②	-	-	-	-	2	
	등의자	③	-	-	-	-	6	
	야외테이블	④	-	-	-	-	2	
	앉음벽	⑤	-	-	-	-	2	
	체력단련시설A	⑥	-	-	-	-	1	
	체력단련시설B	⑦	-	-	-	-	1	
	체력단련시설C	⑧	-	-	-	-	1	
	편의 시설	소 계		23.0	23.0	12.0	12.0	6
화장실		라	23.0	23.0	-	-	-	
이동식화장실		⑨	-	-	12.0	12.0	1	
자전거보관대		⑩	-	-	-	-	5	
녹지및 기타	소계		692.0	692.0	-	-	-	
	녹지 및 기타		692.0	692.0	-	-	-	

3) 도로 결정(변경) 조서

□ 신설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16.0	70.0				
소계					16.0	70.0				
변경	소로	3	1	5.0	5.0	24.0	진입로	북측경계부	휴게광장-1	
		3	2	2.5	3.0	8.0	연결로	진입광장	휴게광장-2	
		3	3	8.0	4.0	32.0	연결로	휴게광장-1	휴게광장-2	
		3	4	1.5	4.0	6.0	연결로	휴게광장-2	남측경계부	

## 속초시 고시 제2021-129호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설악2유원지)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속초 도시관리계획(공간시설: 설악2유원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건설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고시조서 :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공간시설(유원지)

■ 유원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7	설악2유원지	유원지	설악동 705-54 일원	807,492	강고 제2013-143호 (2013. 4. 26)	변경 없음

나. 설악2유원지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1) 세부시설 결정(변경) 총괄표

구 분				시 설 면 적 (㎡)						구 성 비 (%)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부지면적	지상연면적			
총 계	807,492	-	807,492	147,300	감 100	147,200	547,600	-	547,600	100.0	100.0
유희시설	28,698	-	28,698	8,300	-	8,300	26,100	-	26,100	3.6	4.8
운동시설	43,418	-	43,418	11,500	-	11,500	37,200	-	37,200	5.4	6.8
휴양시설	230,928	감 272	230,656	68,500	감 100	68,400	288,100	-	288,100	28.6	52.6
특수시설	147,082	-	147,082	39,200	-	39,200	128,700	-	128,700	18.2	23.5
편익시설	57,337	-	57,337	16,200	-	16,200	56,600	-	56,600	7.1	10.3
관리시설	104,571	증 272	104,843	3,100	-	3,100	10,400	-	10,400	12.9	1.9
기타시설	195,458	-	195,458	500	-	500	500	-	500	24.2	0.1

2) 세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변경사유
7	설악2 유원지	◦ 기존 결정된 유원지 세부 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 C-12 지역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반영을 위한 공용보도 확보(272㎡)

3)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807,492	-	807,492	147,300	감 100	147,200	547,600	-	547,600	-	-	
유회시설			28,698	-	28,698	8,300	-	8,300	26,100	-	26,100	-	-	
A-1	A-1	물고기놀이터 & 물놀이장	9,823	-	9,823	2,900	-	2,900	9,800	-	9,800	5	5	
A-2	A-2	설악산 VR영상관	5,303	-	5,303	1,500	-	1,500	5,300	-	5,300	5	5	
A-3	A-3	유회시설 1	874	-	874	200	-	200	800	-	800	5	5	
A-4	A-4	유회시설 2	4,840	-	4,840	1,400	-	1,400	2,400	-	2,400	5	5	
A-5	A-5	유회시설 3	7,858	-	7,858	2,300	-	2,300	7,800	-	7,800	5	5	
운동시설			43,418		43,418	11,500		11,500	37,200		37,200	-	-	
B-1	B-1	다목적운동장 & 야외공연장	6,611	-	6,611	600	-	600	600	-	600	3	3	
B-2	B-2	연금공단(운동시설 1)	9,498	-	9,498	2,800	-	2,800	9,400	-	9,400	3	3	
B-3	B-3	연금공단(운동시설 2)	11,963	-	11,963	3,500	-	3,500	11,900	-	11,900	3	3	
B-4	B-4	연금공단(운동시설 3)	15,346	-	15,346	4,600	-	4,600	15,300	-	15,300	3	3	
휴양시설			230,928	감 272	230,656	68,500	감 100	68,400	288,100	-	288,100	-	-	
C-1	C-1	생활형숙박시설 1	13,224	-	13,224	3,900	-	3,900	13,200	-	13,200	5	5	
C-2	C-2	생활형숙박시설 2	18,114	-	18,114	5,400	-	5,400	27,100	-	27,100	15	15	
C-3	C-3	펜션단지 1	3,967	-	3,967	1,100	-	1,100	3,900	-	3,900	5	5	
C-4	C-4	펜션단지 2	7,107	-	7,107	2,100	-	2,100	7,100	-	7,100	5	5	
C-5	C-5	펜션단지 3	5,457	-	5,457	1,600	-	1,600	5,400	-	5,400	5	5	
C-6	C-6	펜션단지 4	9,919	-	9,919	2,900	-	2,900	9,900	-	9,900	5	5	
C-7	C-7	생활형숙박시설 3	38,720	-	38,720	11,600	-	11,600	38,700	-	38,700	5	5	
C-8	C-8	생활형숙박시설 4	19,835	-	19,835	5,900	-	5,900	29,700	-	29,700	18	18	
C-9	C-9	생활형숙박시설 5	24,907	-	24,907	7,400	-	7,400	37,300	-	37,300	18	18	
C-10	C-10	단독형 펜션	1,653	-	1,653	400	-	400	1,600	-	1,600	5	5	
C-11	C-11	생활형숙박시설 6	19,848	-	19,848	5,900	-	5,900	29,700	-	29,700	18	18	
C-12	C-12	생활형숙박시설 7	33,058	감 272	32,786	9,900	감 100	9,800	49,500	-	49,500	18	18	근린생활 시설(바닥면적 300㎡ 미만) 중족(지하부분)
C-13	C-13	연금공단(휴양시설 1)	16,536	-	16,536	4,900	-	4,900	16,500	-	16,500	5	5	
C-14	C-14	연금공단(휴양시설 2)	18,583	-	18,583	5,500	-	5,500	18,500	-	18,500	7	7	

시설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b>특수시설</b>			<b>147,082</b>	-	<b>147,082</b>	<b>39,200</b>	-	<b>39,200</b>	<b>128,700</b>	-	<b>128,700</b>	-	-	
D-1	D-1	추양기념관/금강산기독교수양관	7,044	-	7,044	2,100	-	2,100	7,000	-	7,000	5	5	
D-2	D-2	3.1운동 기념박물관	2,780	-	2,780	800	-	800	2,700	-	2,700	5	5	
D-3	D-3	체협의 숲 1	7,356	-	7,356	2,200	-	2,200	7,300	-	7,300	5	5	
D-4	D-4	야외공원 / 야외음악당	6,611	-	6,611	600	-	600	600	-	600	5	5	
D-5	D-5	자연휴식시설 1	3,729	-	3,729	1,100	-	1,100	3,700	-	3,700	5	5	
D-6	D-6	자연휴식시설 2	3,329	-	3,329	900	-	900	3,300	-	3,300	5	5	
D-7	D-7	자연휴식시설 3	2,623	-	2,623	700	-	700	2,600	-	2,600	5	5	
D-8	D-8	자연휴식시설 4	805	-	805	200	-	200	800	-	800	5	5	
D-9	D-9	자연휴식시설 5	791	-	791	200	-	200	700	-	700	5	5	
D-10	D-10	자연휴식시설 6	2,302	-	2,302	600	-	600	2,300	-	2,300	5	5	
D-11	D-11	자연휴식시설 7	3,770	-	3,770	1,100	-	1,100	3,700	-	3,700	5	5	
D-12	D-12	체협의 숲 2/야외조각 전시장	12,761	-	12,761	1,200	-	1,200	1,200	-	1,200	5	5	
D-13	D-13	체협의 숲 3	4,040	-	4,040	1,200	-	1,200	4,000	-	4,000	5	5	
D-14	D-14	자연휴식시설 8	4,105	-	4,105	1,200	-	1,200	4,100	-	4,100	5	5	
D-15	D-15	자연휴식시설 9	10,845	-	10,845	3,200	-	3,200	10,800	-	10,800	5	5	
D-16	D-16	미술관	14,203	-	14,203	4,200	-	4,200	14,200	-	14,200	5	5	
D-17	D-17	자연휴식시설 10	3,305	-	3,305	900	-	900	3,300	-	3,300	5	5	
D-18	D-18	자연휴식시설 11	2,857	-	2,857	800	-	800	2,800	-	2,800	5	5	
D-19	D-19	자연휴식시설 12	11,342	-	11,342	3,400	-	3,400	11,300	-	11,300	2	2	
D-20	D-20	자연휴식시설 13	5,114	-	5,114	1,500	-	1,500	5,100	-	5,100	2	2	
D-21	D-21	온천공	464	-	464	100	-	100	400	-	400	1	1	
D-22	D-22	다목적광장	20,044	-	20,044	6,000	-	6,000	20,000	-	20,000	3	3	
D-23	D-23	연금공단(특수시설)	16,862	-	16,862	5,000	-	5,000	16,800	-	16,800	3	3	
<b>편의시설</b>			<b>57,337</b>	-	<b>57,337</b>	<b>16,200</b>	-	<b>16,200</b>	<b>56,600</b>	-	<b>56,600</b>	-	-	
E-1	E-1	근린생활시설 1	661	-	661	100	-	100	600	-	600	5	5	
E-2	E-2	음식점거리 1	661	-	661	100	-	100	600	-	600	5	5	
E-3	E-3	헬스케어센터/인삼스파	6,602	-	6,602	1,900	-	1,900	6,600	-	6,600	5	5	
E-4	E-4	근린생활시설 2	6,087	-	6,087	1,800	-	1,800	6,000	-	6,000	5	5	
E-5	E-5	근린생활시설 3	2,572	-	2,572	700	-	700	2,500	-	2,500	5	5	
E-6	E-6	근린생활시설 4	10,095	-	10,095	3,000	-	3,000	10,000	-	10,000	5	5	
E-7	E-7	근린생활시설 5	1,984	-	1,984	500	-	500	1,900	-	1,900	5	5	
E-8	E-8	근린생활시설 6	7,934	-	7,934	2,300	-	2,300	7,900	-	7,900	5	5	
E-9	E-9	근린생활시설 7	4,466	-	4,466	1,300	-	1,300	4,400	-	4,400	5	5	
E-10	E-10	근린생활시설 8	2,532	-	2,532	700	-	700	2,500	-	2,500	5	5	
E-11	E-11	근린생활시설 9	1,563	-	1,563	400	-	400	1,500	-	1,500	5	5	
E-12	E-12	근린생활시설 10	804	-	804	200	-	200	800	-	800	5	5	
E-13	E-13	근린생활시설 11	3,306	-	3,306	900	-	900	3,300	-	3,300	5	5	
E-14	E-14	근린생활시설 12	3,305	-	3,305	900	-	900	3,300	-	3,300	5	5	
E-15	E-15	연금공단(편의시설)	4,765	-	4,765	1,400	-	1,400	4,700	-	4,700	3	3	

시설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시설규모(㎡)						층수		비고
						바닥면적(㎡)			지상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관리시설	104,571	증 272	104,843	3,100	-	3,100	10,400	-	10,400	-	-	
F-1	F-1	도로	52,622	증 272	52,894	-	-	-	-	-	-	-	-	도로 증가
F-2	F-2	공공주차장 1	2,284	-	2,284	-	-	-	-	-	-	-	-	
F-3	F-3	공공주차장 2	1,642	-	1,642	-	-	-	-	-	-	-	-	
F-4	F-4	공공주차장 3	6,122	-	6,122	-	-	-	-	-	-	-	-	
F-5	F-5	환승센터	3,724	-	3,724	1,100	-	1,100	3,700	-	3,700	5	5	
F-6	F-6	관광지원안내소	6,764	-	6,764	2,000	-	2,000	6,700	-	6,700	5	5	
F-7	F-7	연금공단(관리시설)	31,413	-	31,413	-	-	-	-	-	-	-	-	
		기타시설	195,458	-	195,458	500	-	500	500	-	500	-	-	
G-11	G-11	기타시설 1 (30m 녹지 1)	14,324	-	14,324	-	-	-	-	-	-	-	-	
G-12	G-12	기타시설 1 (30m 녹지 2)	35,942	-	35,942	-	-	-	-	-	-	-	-	
G-2	G-2	기타시설 2(메모리얼파크)	5,935	-	5,935	500	-	500	500	-	500	3	3	
G-31	G-31	기타시설 3(사유지 1)	40,528	-	40,528	-	-	-	-	-	-	-	-	
G-32	G-32	기타시설 3(사유지 2)	14,630	-	14,630	-	-	-	-	-	-	-	-	
G-33	G-33	기타시설 3(사유지 3)	15,873	-	15,873	-	-	-	-	-	-	-	-	
G-34	G-34	기타시설 3(사유지 4)	576	-	576	-	-	-	-	-	-	-	-	
G-35	G-35	기타시설 3(사유지 5)	26	-	26	-	-	-	-	-	-	-	-	
G-36	G-36	기타시설 3(사유지 6)	32,556	-	32,556	-	-	-	-	-	-	-	-	
G-41	G-41	연금공단 (기타시설 1)	9,508	-	9,508	-	-	-	-	-	-	-	-	
G-42	G-42	연금공단 (기타시설 2)	25,670	-	25,670	-	-	-	-	-	-	-	-	

## 동명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속 초 시 장

###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

지구명	위 치	지정내용			해제사유	비고
		유형	등급	지정면적(k㎡)		
동명4지구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11번지 일원	붕괴 위험	가	0.003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해소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일 : 2021. 10. 22.

3. 문의처 :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 033-639-2403)

붙임 지정해제 지형도면 고시도(별첨) 1부. 끝.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철거·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건축물대장상 소유자에게 말소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 등으로 말소처리를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22.

### 속 초 시 장

1. 공고기간 : 2021. 10. 22. ~ 2021. 11. 05. (14일간)
2. 공고장소 : 속초시 홈페이지, 게시판,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시송달 내용

처분의 제목	당사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성 명	주 소		위 치	건축물현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말소일:2021.11.15.)	오○학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나405	건축물 미존재	교동 774-37	벽돌조 주택 61.9㎡

#### 4.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속초시 건축과(☎033-639-15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_____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m<sup>2</sup>(재활용품)]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5일

###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 준용
3. 주요내용
  - 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 안 제6조)
  - 나. 단장 및 단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 다. 방재단의 임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 안 제9조)
  - 라.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
  - 마. 단원의 소집수당,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 ~ 안 제12조)
  - 바. 방재단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 사.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19조)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4일까지 속초시장 (참조 : 안전총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방문등

1) 전자우편(이메일) : sasasan@korea.kr

2) 주소 :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안전총괄과(안전총괄팀) / 우) 24826

3) 연락처 및 팩스 : 033-639-2759(fax 033-639-2588)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3-639-2759)

##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명칭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른 방재단에 단장 1명, 부단장 2명, 간사 1명 및 단원을 둔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

③ 방재단의 부단장과 간사는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방재단의 단원은 속초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

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

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한다.

**제4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 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단장과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6조(임원 등의 임기)** ① 단장, 부단장, 간사,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임 및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할 경우
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
3. 단장이 타 지역 이주 등 대표자격을 상실할 경우
4. 그 밖에 품위를 손상시켜 단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所在)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진출한 경우(제2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방재단의 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

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

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

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

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

7. 재해복구

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

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9조(방재단의 운영)** 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해야 한다.

③ 단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 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부단장

2. 동 방재단의 대표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방재 전문가

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등)** 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교육

가. 단장: 연 4시간 이상

나. 단원: 연 2시간 이상

2. 훈련: 연 4시간 이상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자문)**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방재단 활동 지원)** ① 단장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따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대하여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

3.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4. 단원의 교육·훈련비

5.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

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출입증)** 단원이 방재단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출입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으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6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제2호 본문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따라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1. 요양보상: 해당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하 “구성원”이라 한다)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날

2. 장해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구성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

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애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

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

**제17조(유족의 우선순위 등)** 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은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9조(재해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재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보상의 종류별 지급기준 (제16조제1항 관련)**

보상등급	보상금 결정 기준		비고
요양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5년분		
장제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3월분		
유족보상	지방서기보 10호봉 봉급액 10년분		
신체 등급별 장해 보상	제1급	유족보상금의 100/100	※부상의 범위 및 등급에 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따른다.
	제2급	유족보상금의 88/100	
	제3급	유족보상금의 76/100	
	제4급	유족보상금의 64/100	
	제5급	유족보상금의 52/100	
	제6급	유족보상금의 40/100	
	제7급	유족보상금의 20/100	
	제8급	유족보상금의 10/100	
	제9급	유족보상금의 5/100	

비고

1. 요양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요양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진료비·치료비·수술비·약제비·입원비 등을 지급한다.
2. 장해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 등급별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2가지 이상의 신체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둘 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따른다.
3. 장제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4. 유족보상: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이 재해 예방·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 또는 교육·훈련 등으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5. 제3호 및 제4호에서 “유족”이란 사망한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또는 조부모를 말한다.

# 임명장

주소

성명

귀하를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임명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장

## 가입신청서<개인>

등록번호 : \_\_\_\_\_

성 명	○○○(성별)	연 령		혈액형	
주 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자 격 증 또는 기능			운전가능여부 (면허종류)		
재 난 현장경험	※ 과거 재난현장에서 활동했던 내용을 정리 예) ○○재난현장에서 구호물품 전달, 이재민 구호, 차량통제, 인명구조, 장비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희 망 활동내용	※ 본인의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본인이 제시				
[특이사항]  ※ 재난관련 사용할 수 있는 장비 등의 보유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 기재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가입희망자 ○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 가입신청서<단체>

등록번호 : \_\_\_\_\_

단 체 명		대 표 자	○○○ (휴대전화)	
주 소			대표전화	
담 당 자	○○○ (휴대전화)	부서명		
인 원	남 ○○명	여 ○○명	총인원	○○명
장 비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장비명(규격) ○○대
지원가능	남 ○○명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장비(규격) ○○대
	여 ○○명			
전문분야	※ 단체의 성격 정리 예) 인명구조, 이재민 구호, 장비지원, 차량지원.. 등 구체적으로 정리,			
활동희망분야	※ 단체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을 지정			
[첨부서류]  (가입희망 회원명부 첨부)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 표 ○ ○ ○ (인)

속초시장 귀하





###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

등록 번호	성 명	활 동 상 황		비 고
		횃 수	시 간	
1				
2				
3				
⋮				

1. 등록번호란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번호를 말합니다.
2. 횃수, 시간은 활동확인서의 활동시간을 합하여 관리합니다.
3. 자료가 계속 변경되므로 한글이나 EXCEL등으로 관리합니다.
4.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기초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 활동계획서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월별	주요내용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 세부사항은 별도로 붙일 수 있습니다.

# 출 입 증

<b>출 입 증</b>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height: 1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사 진 (3×4cm)</p> </div>
<b>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b>

← 5.5cm →

<b>지역자율방재단원증</b>	↑  7.7 c m  ↓
NO. 000                    혈액형 O(RH+)형	
성 명 : ○ ○ ○	
생년월일 : . . ( )	
소 속 :	
이 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재난발생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년    월    일	
속 초 시 장 (인)	
바탕 배경에 시군구 상징(휘장) 삽입	

[별지 제7호서식]

## 요양 [ ] , 장해 [ ] , 장제 [ ] , 유족 [ ] 재해보상청구서

※ 뒤쪽의 첨부서류란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 신고접수 후 제출서류 보완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사고자	소속	전화번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청구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사고자와관계	
사고경위 및 요양	사고(사망)일시	
	사고(사망)장소	
	사고경위 1. 화재 [ ] 2. 구조 [ ] 3. 구급 [ ] 4. 기타 [ ]	
	요양(진단)병원	요양(진단)부위
	요양(진단)결과	요양기간
청구금액	요양보상	장해보상
	장제보상	유족보상
	청구금액	

「속초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해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단장 : (서명 또는 인)

속초시장 귀하

210mm×297mm [백상지 80g/㎡(재활용품)]

제출서류	1. 요양보상(①,③,④,⑦,⑧), 2. 장애보상(①,②,③,④,⑦,⑧) 3. 장제보상(③,④,⑤,⑥,⑦,⑧), 4. 유족보상(③,④,⑤,⑦,⑧) ①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각 1부. ② 장애증명서류 1부. ③ 사고발생 경위서 1부. ④ 사고발생 증명서류(사고발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등) 1부. ⑤ 사망진단서(사망증명 서류) 1부. ⑥ 장제사실 증명서 1부. ⑦ 통장사본 1부. ⑧ 운영위원회 요청서류(필요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요양·장애보상: 주민등록표 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임금계좌확인정보 장제·유족보상: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인감증명서, 임금계좌확인정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 등록번호 뒷자리 7자리 숫자가 가려진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